

주택관리번호: 2021980095

청렴 청신호, 부패 적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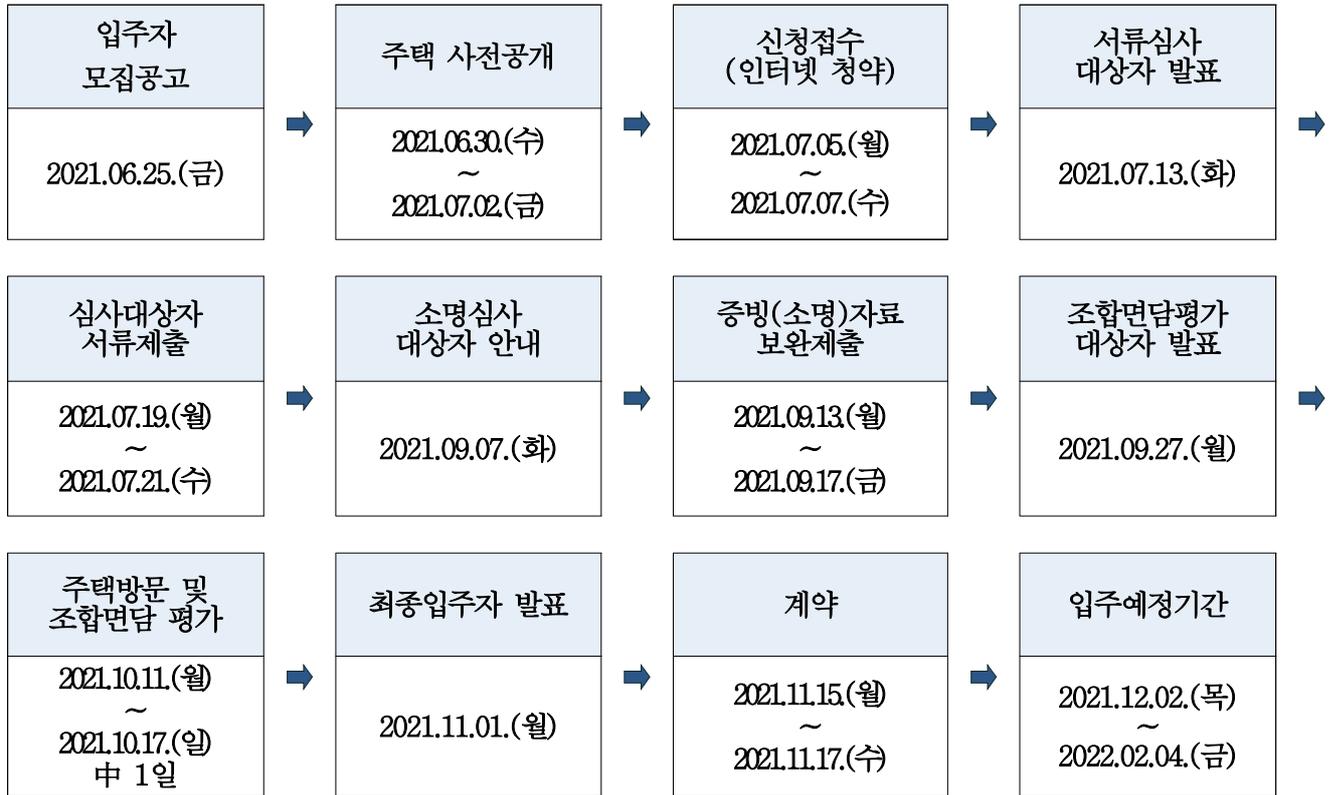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06. 25.]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발성과 자치성이 강조되고 지속적인 주거문화 공유와 주거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잔여세대)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가양동 육아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음채)**은 건설단계부터 육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의 욕구와 개성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고,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거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세대는 모두 잔여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이며, 예비자 선정의 경우 해당 유형의 잔여세대 발생 시 공급됩니다.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 등을 전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6.2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만7세 미만(2014.06.26. 이후 출생자)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신청가능하며, **서울특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만 신청가능**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접수일정) **'21.07.12.(월) 10:00 ~ '21.07.14.(수) 17:00 (인터넷)**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기준 초과 관련 소명대상자는 해당 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공급 주택 위치

-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50(가양동 1494-3) *교통편 : 9호선 증미역 2번출구 도보 1 분



■ 공급 대상 및 임대가격

공급호수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공급세대
		계	계약금(10%)	잔금(90%)		
302호	49㎡	105,000,000	10,500,000	94,500,000	30,000	6세대
403호	49㎡	105,000,000	10,500,000	94,500,000	30,000	
404호	49㎡	105,000,000	10,500,000	94,500,000	30,000	
501호	49㎡	105,000,000	10,500,000	94,500,000	30,000	
502호	49㎡	105,000,000	10,500,000	94,500,000	30,000	
604호	49㎡	105,000,000	10,500,000	94,500,000	30,000	

* 상기 월임대료는 전세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조합운영 및 커뮤니티실 운영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최초계약기간 2년

• 재계약 요건(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②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③ 소득기준 100%이하(단, 임대료 할증부과 시 150%까지 거주 가능), ④ 조합원 자격 유지

※ 만7세 미만 자녀 양육 자격요건은 제외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25.)**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성년자이며 **만7세 미만(2014.06.26. 이후 출생자)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02.06.30. 이후 출생자))은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외국인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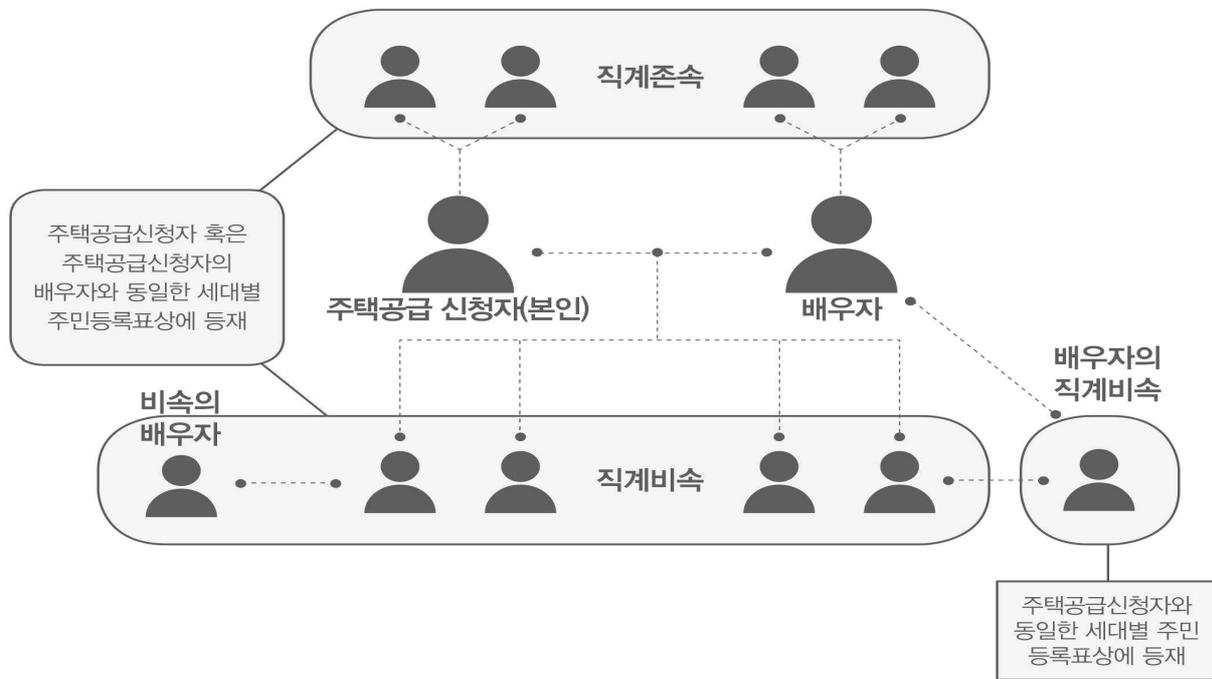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100%이하(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합계 월평균 소득 110% 이하 적용)						
		가구원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5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맞벌이가구의 경우 한명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자 산	부동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상세설명은 [참고3] 참조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상세설명은 [참고3] 참조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는 신청불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관련 유의사항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 이후로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검증, 주택소유여부,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참고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안내

■ 주택공개 (신청접수 전)

공개기간	2021.06.30.(수) – 2021.07.02.(금) [공개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기간 내 주택 직접 방문 (공개기간 외 추가 공개 불가) <li style="padding-left: 20px;">※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세대 평면도 열람 가능 □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입장가능 <li style="padding-left: 20px;">※ 관할센터: 강서센터☎ 02-2657-8100~1)

■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

기간	□ 2021.07.05.(월) 10:00 – 2021.07.07.(수) 17:00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주택유형 및 행정동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신청사항 입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청약내역 확인 및 제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신청자의 가구원 수</u> 등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청약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대상자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순서	내용	결과
1	객관적 평가 (맞춤주택부)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5배수)
2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조합단 면접 대상자 선정(3배수)
3	조합단 면담 평가 (육아협동조합단)	최종입주대상자 선정(1배수)

- 객관적 평가: 인터넷청약 신청자가 체크한 내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근거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공급세대의 **5배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 주관적 평가: 서류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입주지원서 등에 대해 내부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평균점이 높은 자부터 공급세대의 **3배수**에 해당하는 조합단 면접대상자 선정

5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객관적 평가, 5배수)

- 심사대상자 선정 : 인터넷청약신청자 중 고득점순 5배수를 선정하여 서류심사 절차를 진행
- 입주신청 자격

신청 대상	비고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자이며 만7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고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경합 시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 가점제 적용

-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경합발생 시 아래 가점항목의 배점의 합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공급세대수의 5배수)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부양가족 수(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② 만7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수	가. 3자녀 이상	3점
	나. 2자녀	2점
	다. 1자녀	1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인정회차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96회 이상	3점
	나. 84회 이상	2점
	다. 72회 이상	1점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 해당 시	2점
⑤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 거주자	가. 해당 시	2점

- ※ 부양가족수 : ①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②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만19세 미만(2001.06.26.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1.06.24.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③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포함됨.], ④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함.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산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하여야 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 거주사실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로 확인함
-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가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가점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한 점수인 경우 ① 만7세 미만 자녀 수, ②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며 그럼에도 동일할 경우 모두 대상자로 처리함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일괄 문자를 발송합니다.

발표	□ 2021.07.13.(화) 17:00 예정
방법	□ 공사 홈페이지(공고 및 공지) 명단 게시 □ 공사 ARS(1600-3456)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문자(SMS) 전송
유의사항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입한 사항만으로 공급호수의 5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을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21.06.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종료 후 일괄 폐기)

■ 심사서류 제출방법

방법	보낼 주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접수는 비대면 접수방식(등기우편, 이메일)으로만 진행합니다.		
등기우편, 이메일 (택1)	등기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 담당자 앞 □ 구비서류 동봉하여 등기우편 제출 (방문 및 일반우편 제출 불가) □ 2021.07.19.(월) - 2021.07.21.(수) 도착분까지 유효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housing@i-sh.co.kr로 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 제출 □ 이메일 발송시 제목은 반드시 "가양동 육아협동조 심사서류_성명(생년월일)"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19.(월) - 2021.07.21.(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 유의사항

- 등기우편, 이메일 외의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기한 마감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필요서류 및 서류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상세증명서)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공통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정자 자필, 인감날인, 지장) 받아 제출 - 만14세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별지서식3
가양동 육아협동조합 지원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1 참고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한 생각 및 공동체유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2 참고 	

■ 추가 제출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추가 제출 서류	내 용	발 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순위확인서 (또는 주택공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 가입자 제출 (가점대상자 제출)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해당 예치금액이 납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의 가입기간 확인 ※ 주택관리번호: 2021980095 (확인서발급 시 입력코드)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해당은행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제출 (가점대상자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세증명서)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만 제출(가구원수에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주민센터

■ 소득·자산 기준초과 및 주택소유 소명 (대상자에 한함)

소명대상자 발표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9.07.(화) □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한 소명 대상자에 개별 통지 ※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21.09.14.(화) ~ 2021.09.20.(월) ※ 대상서류 : 소득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명 절차,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소득초과,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신청자는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 □ 무주택이나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조합단 면담평가 대상자 선정 (주관적 평가, 3배수)

■ 심사위원 평가(주관적 평가)

조합단 면담 대상자 선정방법	□ 제출서류인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한 생각 및 공동체유지방안'에 대한 평가			
	구분	배점	채점방식	합계
	협동조합형 주택의 생각	5	심사위원 자율배점	10
공동체 유지 방안	5	심사위원 자율배점		
□ 채점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공급세대의 3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 조합단 면담평가 대상자 발표

대상자 발표	□ 2021.09.24.(금) 17:00 예정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주택 방문 및 이음채 조합단 면담기간 : 2021.10.11.(월) ~ 2021.10.17.(일) 중 1일

- 주택 방문 및 이음채 조합단 면담은 지정될 일시에만 가능하며, 해당 일시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
- 조합단 면담을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주택공개 시간 10:00 ~ 16:00

8 최종입주대상자 선정 (1배수)

■ 최종입주대상자(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2021.11.01.(월) 17:00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선정방법	□ 이음채 조합단 면담을 통해 순위 결정
동호선정	□ 주관적 평가점수, 조합단 면담점수의 산술평균 높은 자 우선 선정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 공급호수의 200%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9 계약 및 입주

■ 계약 방법

계약 기간	□ 2021.11.15.(월) ~ 2021.11.17.(수) ※최종대상자 개별 공지 [계약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계약체결	□ 계약 시 아래의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3자(대리인)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인터넷 뱅킹)	
	직계가족 또는 제3자(대리인) 내방 시	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①,②,③) 외 직계가족 대리 시 제3자(대리인)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 날인)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입주

기 간	□ 2021.12.02.(목) ~ 2022.02.04.(금)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대상자에게 계약안내문 등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관할 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수령한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반드시 입주 전 해당권역 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대출 관련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는 불가능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0 문의

■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문의

- 콜센터 ☎ 1600-3456
- 맞춤주택부 ☎ 02)3410-8564, 8547

■ 주택사전공개, 입주 등 주택관련 문의

- 강서센터 ☎ 02)2657-8100~1

11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해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해당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예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53조에 의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보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 세대구성원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심사서류 및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선정기준과 관련해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되며, 이와 관련해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임대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우편(계약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신청접수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반납해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보장정보(법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 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1.06.25.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참고1] 인터넷 청약 방법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예정자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자동차, 자산기준 등),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우선공급자격여부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예정) 취소되어 계약이 거절되오니 주택공급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서 해당 접수일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별 자치구 “동”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확인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이니텍,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 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분양권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
- ※ **준공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참고3] 소득 및 자산기준 항목 설명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물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해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 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 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해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하며,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근로복지공단 자료 ③국민연금공단 자료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발급→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소득 중복	반영 (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별지 서식 1]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 입주자 지원신청 접수번호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도로명주소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작성)		

■ 가점항목(해당사항에 체크하십시오)

① 부양가족수(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3인이상	<input type="checkbox"/> 2인	<input type="checkbox"/> 1인
② 만7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수	<input type="checkbox"/> 3자녀 이상	<input type="checkbox"/> 2자녀	<input type="checkbox"/> 1자녀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input type="checkbox"/> 96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84회이상 96회미만	<input type="checkbox"/> 72회이상 84회미만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하지 않음	
⑤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해당지역	<input type="checkbox"/> 그 외 지역	

작성시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2021.6.25.)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만19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함.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산되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 거주사실은 관할 주민센터의 확인에 의함
-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이 가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가점항목별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사실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별지 서식 2]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 주관적심사

접수번호	
------	--

※ 입주자 지원신청 접수번호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명		연락처	
----	--	-----	--

■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한 생각

(길이의 제한이 없으므로 칸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이셔도 됩니다.)

■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 공동체 유지 방안**

(길이의 제한이 없으므로 칸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이셔도 됩니다.)

[별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

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